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이 해석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에 저작권이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기타 출판물(이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의 정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영어로 출판한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의 복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출판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http://www.iasb.org)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및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관계기업,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그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한국어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 저작권의 주장을 포기한 경우 외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This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public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public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IASCF). The approved tex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other IASB Publications is the text that is published by the IASCF in English, copies of which may be obtained from the IASCF. Please address publications and copyright matters to:

IASCF Publications Department, 30 Cannon Street, London EC4M 6XH, United Kingdom.  
Telephone: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Web: [www.iasb.org](http://www.iasb.org)

IASCF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of th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which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the IFRIC, 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above material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ASCF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above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 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문단번호

참조

적용

한1.1

회계논제

1~3

결론

4

시행일

한4.1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는 문단 한1.1~한4.1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서의 적용범위와 효력은 기업회계기준 '전문'의 문단 24와 25에서 규정한다.

# 개 요

##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해석서를 제정하였다.

이 해석서는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이 해석서의 주요 특징

### 1. 주요 요구사항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에 직접 가감되는 경우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와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25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는 상설해석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Income Taxes - 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erprise or its Shareholders)’에 대응하는 해석이다.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25호의 준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해석(SIC) 제25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 법인세:기업이나주주의납세지위변동

### 참조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적용

---

한1.1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 회계논제

---

- 1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법인세 부채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기업의 지분상품이 상장되거나 자본이 재조정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가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기업은 다르게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 과세혜택을 받거나 잃을 수 있고 적용될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 2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기업의 당기법인세 부채나 자산에 즉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납세지위의 변동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함으로 인해 발생할 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업이 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

- 3 회계논제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가 변동됨에 따른 세효과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 결론

---

- 4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납세지위 변동에 따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 및 사건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에 직접 가감되는 경우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당해 세효과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세효과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4.1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과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의 모든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한 규정

- (1) 이 해석서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을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다만, 자본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2)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는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 해석서에 따르면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에 따라 당해 기업의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된 경우, 이로 인한 세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세효과가 동일 기간 또는 다른 기간에 자본으로 인식된 금액의 변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 (3) 다만, 이 해석서가 없는 경우에도 동 기준서 문단 41과 문단 42에 따라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고 측정 금액이 변경된 경우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서 제2025호의 결론은 일반원칙과 동일하다.
- (4) 회계추정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 원칙은, 인식된 법인세 금액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문단 52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즉,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원칙

에 따른 회계처리와 해석서에 따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문단 52에 따른 회계처리가 모두 동일하므로 차이가 없다.